

- 서울특별시 9호선 4단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-

심 사 보 고

의 안 번 호	1003
------------	------

2019년 9월 6일
교 통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년 8월 7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9년 8월 13일

다. 상정일자

-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교통위원회(2019년 8월 29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)

가. 제안이유

-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사업은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앙보훈병원에서 고덕강일1지구까지 9호선을 연장 건설하는 사업임
- 9호선 4단계 건설을 위한 「9호선 4단계 도시철도기본계획」 수립을 위해 「도시철도법」 제6조에 따라 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○ 개요

- 건 명 : 9호선 4단계 도시철도기본계획(안)
- 위 치 : 강동구 보훈병원~고덕역~고덕강일1지구
- 규 모 : 연장 4.1km, 정거장 4개소
- 사업기간 : 2020년~2027년
- 총사업비 : 6,477억원

○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의 경제성 분석 등

- (경제성 분석) 비용-편익비(B/C)는 1.03으로 분석

<경제성 분석 비교>

(단위:억원)

구 분	할인비용	할인편익	B/C ¹⁾	NPV ²⁾	IRR ³⁾ (%)
예비타당성조사	5,818	5,743	0.99	-74.4	4.34
기본계획	6,906	7,118	1.03	212	4.74

- ※ 본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을 고려하지 않으나 재무성 분석 시 수입-비용비(R/C)는 0.58로 분석됨

1) B/C (Benefit Cost Ratio, B/C 비율) : 편익/비용 비율, 1.0이상(B/C ≥ 1.0)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

2) NPV (Net Present Value, 순현재가치) : 사업에 수반된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기준연도의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제한값이며 0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

3) IRR (Internal Rate of Return, 내부수익률) :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로 환산된 값이 같아지는 할인율 R을 구하는 방법으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, 내부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(4.5%)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

○ 개략적인 노선망 현황

- (노 선) 서울 9호선 보훈병원역에서 고덕강일1지구까지 4.1km
- (정 거 장) 고덕강일1지구 계획, 서울 5호선(고덕역)과의 환승, 선형조건, 열차운영 등을 고려한 4개역
- (차량기지) 기존 서울 9호선 개화차량기지에 신규차량(3편성) 유치

○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

-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비하여 사업기간은 동일, 총사업비는 884억 원 증액

※ 변경된 총사업비에 대해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협의 필요

<총사업비 비교>

구 분	예비타당성조사	기본계획(안)	비 고
사업기간	2018~2025	2020~2027	설계, 공사
총사업비	5,593억원	6,477억원	증 884억원

○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분담비율을 포함한 자금의 조달방안 및 운용계획

- (자금조달방안) 「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」에 근거하여 국비(40%) 및 지방비(60%)로 자금 조달(분담금 896억원 별도)
- (지방비 재원조달 적정성 평가) “중기지방재정계획 5년 평균”과 “건설 및 운영기간(40년) 평균” 관련사항 비교

※ “중기지방재정계획 5년 평균, 시비투입액/자체수입(or 투자가용재원)” > “건설 및 운영기간(40년) 평균, 시비투입액/자체수입(or 투자가용재원)”인 경우 “OK”

· “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 3.2.8 7) 나”에 근거하여 적정

<지방비 재원조달 적정성 평가>

(단위:억원)

구 분	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	건설 및 운영기간(40년)
	2019년 ~ 2023년 평균	2020년 ~ 2059년 평균
시비투입액(A)	110	114
지자체 자체수입(B)	11,930	16,491
투자가용재원(C)	79,477	97,677
시비투입액/자체수입(A/B)	0.92%	0.71%
시비투입액/투자가용재원(A/C)	0.14%	0.12%

○ 도시철도의 건설 방식

- (터널공법 구간)

- 939정거장~940정거장 : 동남로 하부통과에 따른 사유지 저축 배제 및 지반조건(발파음)을 고려한 시공 여건 반영
- 940정거장~과업종점 : 지하철 5호선(터널구간) 및 서울~세종고속도로 하부를 통과하는 현장여건(대심도 굴착) 반영

- (개착공법 구간)

- 4개 정거장(941정거장은 개착+터널)
- 시점~939정거장 종점부, 940정거장 시점부, 과업 종점부 : 지반조건(토사 및 풍화암) 및 상부토피고(저토피) 현황을 고려한 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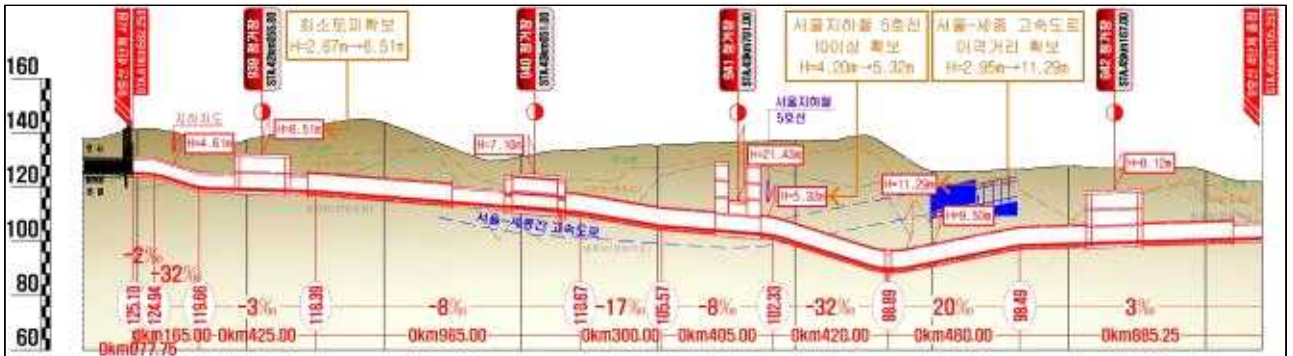
공 특성 반영

- 시점부 기존 지하차도 하부통과구간은 시공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비개착공법 적용

<평면선형계획>



<종단선형계획>



○ 도시철도차량의 종류 및 운행계획

- (차량종류) 도시철도차량표준규격에 적합한 사양을 설정하고 서울 9호선 기존차량과의 상호 호환성 및 운행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채택

<차량주요제원>

차량형식	차량크기 (1량당)	편성당 차량수	전기/ 급전방식	승객정원	운전 최고속도
重量전철 (HRT)	19.5m(L)×3.12(W)×4.0(H)	6량 1편성	DC 1,500V / 가선방식	정원: 922명 혼잡: 1,383명	80km/h

- (운영계획) 서울 9호선 운영계획과 동일하게 반영

<열차운영계획>

구 분		영업시간(평일)	비 고
일일영업시간		05:30 ~ 익일 01:00	19.5h
첨두	오전	07:00 ~ 09:00	4.0h
	오후	18:00 ~ 20:00	

○ 기대효과

-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건설로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지하철 이용효율 향상 및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시철도법」 제6조

나. 예산조치 : 연도별 사업예산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없음

마. 위치도



4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동수)

가. 개요

- 동 의견청취안은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하철 9호선 3단계 종점인 중앙보훈병원역에서 고덕강일1지구까지 연장하는 지하철 9호선 4단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

건설을 추진하려는 노선에 대해 노선의 기종점, 정거장 위치 등 개략적인 노선망,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, 도시철도 차량의 종류 및 자금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“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”을 수립하여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「도시철도법」 제6조 등⁴⁾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임

【서울지하철 9호선 4단계 도시철도건설사업】

구 분	4단계 구간
구 간	중앙보훈병원역~고덕역(5호선)~고덕강일1지구
규 모	연장 4.1km, 정거장 4개역
사업기간	2020~2027
총사업비	6,477억원
특 징	재정사업

4) 「도시철도법」 제6조(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시·도지사는 도시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도시철도 노선 중 건설을 추진하려는 노선에 대해서는 관계 시·도지사와 협의하여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~ (이하 생략) ~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2.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의 경제성·재무성 분석과 그 밖의 타당성의 평가 3. 노선명(路線名), 노선 연장, 기점(起點)·종점(終點), 정거장 위치, 차량기지 등 개략적인 노선망(路線網) 4.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5.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담비율을 포함한 자금의 조달방안 및 운용계획

③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「도시철도법 시행령」 제5조(기본계획의 주요 사항) 법 제6조제3항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 1. 법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. 도시철도의 건설 방식 3. 도시철도차량의 종류 및 운행계획

나. 검토의견

- 현재 서울지하철 9호선은 2009년 1단계 구간부터 2018년 3단계 구간 개통까지 3단계에 걸쳐 개화역에서 중앙보훈병원역까지 총 연장 40.6km, 총 38개역을 건설하여 운영 중에 있음

【서울지하철 9호선 일반현황】

구 분	1단계 구간	2단계 구간	3단계 구간
구 간	개화역~신논현역	연주역~종합운동장역	삼전사거리~보훈병원
규 모	27km(25개역)	4.5km(5개역)	9.1km(8개역)
개 통 일	'09.7.24	'15.3.28	'18.12.1
계약기간	'09. 7~'38.11	'17.11~'20. 8	
시 행 자	서울시메트로9호선(주)	서울특별시	
운 영 사		서울교통공사	
사 업 비	1조 1,551억원 (민간 6,631억원, 재정 4,920억원)	4,909억원	1조 4,015억원
특 징	민간투자사업(BTO)	재정사업(민간위탁)	

- 9호선 4단계 건설사업은 '15년 6월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승인과 '18년 5월 예비타당성 조사⁵⁾를 완료하였고, '19년 7월 중앙투자심사 통과⁶⁾와 공청회를 개최⁷⁾하였으며, '19년 8월 현재 기본계획 용역⁸⁾이 진행 중에 있음

5)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알림(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),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-1470(2018.5.28.), 총 사업비 5,592억원, B/C 0.99

6) 2019년 제2차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결과 알림,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-3154(2019.7.1.)

사 업 명	사업기간	사업량	사업비 (억 원)	심사결과	
				내 용	의 견
서울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	2018~2027	도시철도건설 3.8km 정거장 4개소	5,929 (국 2,013) (시 3,020) (기 896)	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필요 국토부 기본계획 승인 후 국비 지원계획 확정 후 추진	조건부

7) 9호선 4단계 도시철도 기본계획(안) 공청회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, 2019.7.4.(목)

8) 계약체결 통보(9호선 4단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), 재무과-41597(2018.9.6.)

동 의견청취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'19년 9월 기본 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'19년 12월 총사업비 및 기본계획 승인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완료한 후 '20년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(붙임1 참조)

- 9호선 4단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살펴보면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역과 고덕강일1지구 구간 총 연장 4.1km, 정거장 4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,477억원을 투입하여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임

경제성 분석에 따른 비용편익비(B/C)⁹⁾는 1.03으로 분석되어 경제성을 확보하였고, 지하철 5호선 고덕역과의 환승을 계획하여 지하철 환승편의성을 갖추었음

지방비 재원조달 적성성 평가에서도 적정성¹⁰⁾을 평가받았고, 도시철도 차량표준규격¹¹⁾에 적합한 전동차 사양을 설정함으로써 기존 9호선 차량과의 호환성 및 운행안전성을 확보하였음

기존 지하철 9호선 운영계획과 동일하게 일일 영업시간과 오전 오후 침두시간을 계획¹²⁾함에 따라 9호선 4단계 연장건설로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지하철 이용효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

계약명	계약업체		계약금액(천원)	계약일	용역기간
	상호명	대표자			
9호선 4단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	(주)신성엔지니어링 외 6개사	정찬섭	663,580	2018.9.5.	2018.9.6. ~2019.9.5

9) 비용편익비(B/C Ratio, Benefit Cost Ratio) : 비용의 현재가치에 대한 편익의 현재가치 비율로서 1.0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

10) 중기지방재정계획기간(2019~2023년) 평균 시비투입액/투자가용재원(0.14%) > 건설 및 운영기간(40년) 시비투입액/투자가용재원(0.12%)

11) 차량주요제원

- 차량형식 : 중량전철 - 차량크기(1량) : 19.5m(L)×3.12m(W)×4.0m(H) - 편성당차량수 : 6량1편성
- 전기/급전방식 : DC 1,500V/가선방식 - 승객 정원 : 922명, 혼잡 1,383명 - 최고속도 : 80km/h

12) 일일영업시간 (19.5h) 05:30~익일 01:00, 침두시간(4.0h) 오전 07:00~09:00, 오후 18:00~20:00

- 다만, 9호선 4단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사업기간과 총사업비를 살펴보면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사업기간(7년)과는 동일하나 환기구 및 지하차도 통과에 따른 비개착공법 추가, 건축면적 및 연장 증가, 기존차량 개량비 등 총 사업비 884억원이 증액¹³⁾되었는 바,

9호선 4단계 연장구간에 대한 실제 공사추진과 개통시기 등을 고려할 때 변경된 총 사업비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정협의를 필요하다 하겠음

【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비교】

구 분	예비타당성조사	기본계획안	비 고
사업기간	2018~2025	2020~2027	설계, 공사
총사업비	5,593억원	6,477억원	증 884억원

- 또한, 9호선 4단계 완공 및 개통에 따라 실제 이용하는 지역주민을 고려할 때 계획 중인 지하철 역사와 출입구 위치는 모든 지역주민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우 민감한 사항 중 하나라 할 것임

13) 9호선 4단계 건설사업 총사업비 증액 현황

구 분	예비타당성	기본계획안	증감액	비 고	
총사업비	5,593	6,477	884		
시설부대비	512	595.6	83.6	공사비증가	
공사비	소 계	4,328.7	552.4	1,223.7	
	토 목	3,326.7	3,891.7	565.0	본선환기구 및 지하차도 통과에 따른 비개착공법 추가
	건 축	530.7	891.9	361.2	건축면적 증가
	케 도	115.5	117.0	1.5	연장 증가
	설 비	355.7	651.8	296.1	차상방식 적용
예비비	484.1	-	-484.1	상세검토에 따른 예비비 삭감	
차량구입비	268.2	286.2		6량3편성	
기존전동차 개량비	-	42.8	42.8	기존차량 개량비	

면밀한 수요검토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하철 이용수요와 만족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위치에 지하철 역사와 출입구가 건설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, 그에 따른 지역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당 위치에 대해 합당한 이유와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

- 특히, 최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큰 만큼 공사 중 안전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고, 대규모 장기간 공사에 따른 소음과 교통소통에 대한 공사 중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할 것임

도로함몰, 지하수위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과정부터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고, 공사 중 소음과 진동, 비산먼지와 중장비 운영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9호선 4단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

의 안 번 호	1003
--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8월 7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사업은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앙보훈병원에서 고덕강일1지구까지 9호선을 연장 건설하는 사업임.
- 나. 9호선 4단계 건설을 위한 「9호선 4단계 도시철도기본계획」 수립을 위해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라 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개 요

- 건 명 : 9호선 4단계 도시철도기본계획(안)
- 위 치 : 강동구 보훈병원~고덕역~고덕강일1지구
- 규 모 : 연장 4.1km, 정거장 4개소
- 사업기간 : 2020년 ~ 2027년
- 총사업비 : 6,477억원

나.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의 경제성 분석 등

- (경제성 분석) 비용-편익비(B/C)는 1.03으로 분석

<경제성 분석 비교>

(단위 : 억원)

구 분	할인비용	할인편익	B/C ¹⁾	NPV ²⁾	IRR ³⁾ (%)
예비타당성조사	5,818	5,743	0.99	-74.4	4.34
기본계획	6,906	7,118	1.03	212	4.74

* 본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을 고려하지 않으나 재무성 분석 시 수입-비용비(R/C)는 0.58로 분석됨

다. 개략적인 노선망 현황

- (노 선) 서울 9호선 보훈병원역에서 고덕강일1지구까지 4.1km
- (정 거 장) 고덕강일1지구 계획, 서울 5호선(고덕역)과의 환승, 선형조건, 열차운영 등을 고려한 4개역
- (차량기지) 기존 서울 9호선 개화차량기지에 신규차량(3편성) 유치

라.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

-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비하여 사업기간은 동일, 총사업비는 884억원 증액
- ※ 변경된 총사업비에 대해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협의 필요

<총사업비 비교>

구분	예비타당성조사	기본계획(안)	비고
사업기간	2018~2025	2020~2027	설계, 공사
총사업비	5,593억원	6,477억원	증 884억원

1) B/C (Benefit Cost Ratio, B/C 비율) : 편익/비용 비율, 1.0이상(B/C ≥ 1.0)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

2) NPV (Net Present Value, 순현재가치) : 사업에 수반된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기준연도의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제한값이며 0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

3) IRR (Internal Rate of Return, 내부수익률) :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로 환산된 값이 같아지는 할인율 R을 구하는 방법으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, 내부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(4.5%)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

마.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분담비율을 포함한 자금의 조달방안 및 운용계획

- (자금조달방안) 「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」에 근거하여 국비(40%) 및 지방비(60%)로 자금 조달(분담금 896억원 별도)
- (지방비 재원조달 적정성 평가) “중기지방재정계획 5년 평균”과 “건설 및 운영기간(40년) 평균” 관련사항 비교

* “중기지방재정계획 5년 평균, 시비투입액/자체수입(or투자가용재원)” > “건설 및 운영기간(40년) 평균, 시비투입액/자체수입(or투자가용재원)”인 경우 “OK”

- “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 3.2.8 7) 나)”에 근거하여 적정

〈지방비 재원조달 적정성 평가〉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	건설 및 운영기간(40년)
	2019년 ~ 2023년 평균	2020년 ~ 2059년 평균
시비투입액(A)	110	114
지자체 자체수입(B)	11,930	16,491
투자가용재원(C)	79,477	97,677
시비투입액/자체수입(A/B)	0.92%	0.71%
시비투입액/투자가용재원(A/C)	0.14%	0.12%

바. 도시철도의 건설 방식

○ (터널공법 구간)

- 939정거장~940정거장 : 동남로 하부통과에 따른 사유지 저축 배제 및 지반조건(발파암)을 고려한 시공 여건 반영
- 940정거장~과업종점 : 지하철 5호선(터널구간) 및 서울~세종 고속도로 하부를 통과하는 현장여건(대심도 굴착) 반영

○ (개착공법 구간)

- 4개 정거장 (941정거장은 개착+터널)
- 시점~939정거장 종점부, 940정거장 시점부, 과업 종점부 : 지반조건 (토사 및 풍화암) 및 상부토피고(저토피) 현황을 고려한 시공 특성 반영
- 시점부 기존 지하차도 하부통과구간은 시공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비개착공법 적용

<평면선형계획>



<중단선형계획>



사. 도시철도차량의 종류 및 운행계획

- (차량종류) 도시철도차량표준규격에 적합한 사양을 설정하고 서울 9호선 기존차량과의 상호 호환성 및 운행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채택

<차량주요제원>

차량형식	차량크기 (1량당)	편성당 차량수	전기/ 급전방식	승객정원	운전 최고속도
重量전철 (HRT)	19.5m(L)×3.12(W)×4.0(H)	6량 1편성	DC 1,500V / 가선방식	정원: 922명 혼잡: 1,383명	80km/h

- (운영계획) 서울 9호선 운영계획과 동일하게 반영

<열차운영계획>

구 분		영업시간(평일)	비 고
일일영업시간		05:30~익일 01:00	19.5h
첨두	오전	07:00~09:00	4.0h
	오후	18:00~20:00	

아. 기대효과

-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건설로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지하철 이용효율 향상 및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

자. 위치도



※ 본 자료상의 내용 및 위치 등은 관계기관 협의, 설계 및 공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도시철도법 제6조
- 나. 예산조치 : 연도별 사업예산 편성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 타 : 없음

※ 작성자 :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박현우 (☎772-7131)